

춘천 레고랜드 내년 3월 본공사 착공

멀린사, 현금투자 의사 전해
“5270억원 단계적 투자하겠다”
공사비 지급 제임대 방식 합의

춘천 중도에 조성 중인 레고랜드가 빠르면 내년 3월 중 본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 9월 도의회에 상정한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동의안 내용을 보완,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레고랜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과 원태경 운영위원장

은 지난 11일 멀린엔터테인먼트 존야콥슨 총괄사장과 존 어셔 레고랜드 개발사장 등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임원들은 기존의 현물투자 뿐 아니라 현금투자의 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멀린사는 중도 레고랜드에 총 527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1300억원 규모의 투자액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멀린측은 지난 5월 도와 멀린사가 맺은 세부협약(MDA)에 대해서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승인, 멀린사가 공사를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대출금액 중 본공사비 반영을 놓고 논란이 됐던 공사비용 지급은 도가 800억원을 투자, 자산을 취득한 뒤 레고랜드에 제임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도는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멀린사측과 서명식을 갖고 설계변경 등 후속일정에 착수,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본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사비의 현금지급과 총공사비 등 많은 문제들이 기대 이상으로 해결됐다”며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일정에 착수, 내년 초 본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공직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조작’ 1557명 행정처분 확정

엔지니어링업계 ‘官피아’ 뇌관 터졌다

허위경력으로 재취업 적발
4~8개월간 업무정지 철폐
수주 참여한 사업서 발빠야
업계, 대체 기술자 확보 비상
‘설계 차질’ 발주처마저 혼란



남북 전방 GP 동시철거 시작 · 남북이 냉전 시대의 산물인 전방 GP(감시초소) 철거작업을 12일부터 시작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이날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GP를 방문해 굴착기로 철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육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출신의 허위경력 기술자 뇌관이 터졌다.

재취업을 위해 경력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퇴직기술자들은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철퇴를 맞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설계·감리 사업수주에 나섰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물론 사업 성과를 기대한 발주처마저 혼란에 빠졌다.

12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전·부산·원주·익산 지방국도관리청과 제주도청 등은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관련기사 3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지자체 퇴직자 1070명과 공기업 퇴직자 623명 등 모두 1693명(32%)에 대한 경력증명서 허위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조치다.

여기에는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국방부·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퇴직한 건설기술자와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술자 가운데 경력을 허위 기재한 953명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대전·부산·원주·익산 지방국도관리청 등에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임했고, 이들 기관은 허위경력 기술자에 대한 소명기회 등을 거쳐 기술자별 업무정지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

그렇게 기관별 허위경력자 행정처분 통보 결과가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11월 현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과태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한 허위경력자 수는 782명, 대전지방국도관리청 224명, 부산지방국도관리청 219명, 익산지방국도관리청 245명, 원주지방국도관리청 80명, 제주도 7명 등으로 집계됐다.

무려 1557명에 달하는 수치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4~8개월 기량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결과를 집계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공공기관 퇴직기술자의 허위경력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

개월간 소명과 재조사 등을 거쳤다”며 “이제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이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기술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집중됐고, 분야는 설계에 쏠려 있다”고 덧붙였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업무정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대체기술자 확보에 나섰지만 경력과 실적, 업무중복도 등 PQ 기준뿐 아니라 이적계수 등까지 고려해 적합한 기술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주처뿐만 아니라 우리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뉴스 Focus 퇴직기술자 무더기 ‘업무정지’… 대응책 고심

‘퇴직 유도 - 급여조정’ 방안 놓고 저울질 “PQ용 기술자 대신 젊은 인재 육성해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퇴직기술자는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퇴출을 고려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B임원

“수주를 위해선 발주청과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한데, 발주처 출신 기술자를 퇴출하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C엔지니어링사 D임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1500여명의 퇴직기술자를 놓고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업무정지 통보를 받은 퇴직기술자는 현재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거쳐 수주한 사업에서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퇴출’과 ‘급여 조정’이라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앞으로 퇴직기술자들이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사업에 투입할 대체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

데 업무정지 통보를 받은 기술자와 이를 대체할 책임기술자급 급여를 이종으로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퇴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는 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이 이어지다 보니 사업 수주에도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신용도 평가 부문에는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계, 대체 기술자 확보 불가피
급여 ‘이중부담’… 퇴출 수순

업무정지 처분 끝나더라도

PQ 감점 ‘수주 걸림돌’ 우려

“발주처 출신 눈치 볼 수밖에”
급여 낮춰 타부서 배치 고려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퇴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간이 4~8개월인 만큼 길게 잡아 2020년 상반기까지 PQ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 대신 젊은 기술자의

영입·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퇴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가능하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해 이른바 관 출신 ‘PQ용 기술자’ 대신 젊은 엔지니어를 추가 영입·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설계 PQ 기준은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 젊은 기술자가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 출신 기술자 대신 젊은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력을 보다 견실히 할 전회워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위경력 기술자라도 발주처 출신이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진행될 내년 연봉 협상에서 급여를 낮춰 현상이 아닌 지원분

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며 “허위경력에 따른 업무정지를 통보받았더라도 그가 속해 있던 공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퇴직을 권유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를 낮추고, 실적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형 입찰이나 민간 투자사업과 같은 합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社 說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근본 해결책 나와야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대해 차수별로 계약한다. 차수별 예산 배정 부족이 주 원인이 되고 여기에 민원, 용지 보상 지연 등이 겹치며 통상 국토건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두 배가량 늘어난다.

거제시 우회 도로공사의 경우 공기가 5년에서 12.3년으로 두 배반 증가했다. 현재 발주기관들이 건설사 귀책사유 없는 간접비를 보전해 주지 않아 1조2000억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장기계속공사의 부기사항인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간접비 증액을 불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설업체들은 날벼락과 같은 판결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장기계속공사 관련 국가계약법령의 불합리한 규정이 원인이 됐다. 계약의 핵심사항인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계약 관련 규정에서는 단지

'부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대법원은 이에 대한 합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다. 앞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비용은 책임 없는 건설업체들이 다 뒤집어써야 할 판이 됐다.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에서 한국당 박덕흠 의원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판결로 발주자들의 대규모 갑질 행태가 사실상 용인돼버린 현 상황은 현 정부의 '공정경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이참에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개선방안에 대한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공백기와 휴지기를 포함한 총공사기간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